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7. 21.(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의결안건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명예훼손 우려 및 인사관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 안건 중 <의결안건 다>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개 안건을 모두 끝난 후에 비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에 관한 건 (2016-42-14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월에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방송평가의 세부 배점방식과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으나, 다만 맨 마지막으로 지난 7월 8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본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 오늘 보고하는 내용대로 의결해 주었음을 보고드리며, 그 주문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내용영역에서 먼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제재조치 1건에 다수의 위반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누적건수가 많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음입니다. 제재조치 선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통위 의결일, 방심위 의결일, 방심위 소위 의결일 순서로 선후관계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중위 및 법원의 오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시점을 이의 신청 및 소송이 완결된 후로 정하였습니다. <나> 편성영역입니다. 먼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항목에 15점, 시정 실적 항목에 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OBS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해당 연도에 요청하는 재난방송 건수 차이를 감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기준으로 5점을 평가하고, 광고판매 기준 시간대를 차등 적용하여 5점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 관련입니다. 오락의 경우에는 현재 60%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보도 분야 평가를 신설하여 보도에 있어서는 45%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영역으로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를 평가하면서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하였으며, 두 번째로 콘텐츠 투자비에 방송사 내부 제작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을 평가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지상파TV 3사와 종편PP는 제작 8점과 유통 2점으로 평가하고, 두 번째로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5단계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SO·위성의 채널공급 계약 시 채널 선정기준의 적절성과 PP 만족도 평가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SO·위성방송의 채널구성 다양성 평가를 신설하면서 채널수 평가에 10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채널 등의 채널수 비율에 따라 5점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쇼핑의 소비자원 민원평가 시 구제 조치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8월까지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매체별 세부기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방송평가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나>의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전체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전체위원이 동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오락 분야의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항목 평가기준 관련해서 오락 분야 60%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지만 보도 분야에서는 45%의 평가기준이 다소 높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한 분 있었고, 위원장을 하셨던 부위원장께서도 다소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대다수의 위원들께서 이 제도 도입이 처음이라는 점, 그다음에 어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어디를 정하더라도 자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초 평가 도입이라는 점에 더 주안점을 둬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45%를 하는데 동의하시고 그 당시 위원장이신 부위원장께서도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감안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방송평가위원회 의견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4페이지를 보면 방송평가에 관한 것인데 보도비율이 작년 통계를 보니까 <표>에 작년도에는 45%를 상회하는 종편의 보도편성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작년에 이행 촉구라든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종편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실적 평가를 하면서 TV조선의 경우에는 보도비율을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마 권고사항으로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행촉구를 한 것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그런지 올 상반기에 총선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같은 경우는 46.2%에서 40.9%로 낮아졌고, 그게 이행촉구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편성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5%로 평가기준을 보도 편성비율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올 상반기를 볼 것 같으면 가장 높은 비율이 종편의 경우 40.9%, 또 4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5%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보도편성 비율보다도 더 높아지고, 오히려 더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종편의 경우에 종합편성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보도 중에서도 정치뉴스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 주시청시간대에 33%, 23%, SBS는 20%에 불과한데 여전히 종편 같은 경우는 40%를 육박하거나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라는 평가기준이 적절한지는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45%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처 의견은 45%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 사무처에서는 45% 정도가 이번 제도 도입을 하는 데는 가장 적정하다고 보았고, 그렇게 본 이유는 다른 40%이나 또는 35%, 50%, 55%, 어떤 것을 정하더라도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논란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측면에서는 45%로 정하는 것이 어떤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지금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특정 한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촉구를 정부에서 한 이후로 상당히 보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면 45%라고 하는 기준점이 종편으로 하여금 보도비율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평가기준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을 넘나드는 실제 보도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그것은 새로운 규칙 내용을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처음 도입되는 평가제도이기 때문에 45% 정도를 적정선이다, 이렇게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주시청시간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온 국민이 시청하는데 종편에서 보도가 너무 과잉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다 자율적인 편성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뉴스 해설이라든가 또는 출연자가 패널이 나와서 뉴스의 뒤 배경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도 보도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교양으로 분류됩니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상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 보도, 논평 또는 해설 등의 프로그램은 보도로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는 출연자가 나와서 뉴스를 이야기할 때도 교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뜩이나 보도과잉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엄격하게 분류기준을 정해서 보도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 교양으로 편성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도 분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자칫하면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정한 기준과 다르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년도에 평가할 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들을 한 번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 브로드하게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분류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를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준 보도전문채널 같은 경우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종편이 종합편성인데 보도비율이 너무 높냐, 그렇다면 보도전문채널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5%라고 하는 기준선을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하는 만큼 45%의 보도 분류를 제대로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것은 보도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교양으로 분류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종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사별 주 시청시간대 보도편성비율 <표>를 가지고 있는데 주시청시간대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주시청시간대 평일은 7시부터 11시까지가 되고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녁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주말인 경우에는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녁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종편의 경우는 주시청시간이 프라임타임, 가장 많이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낮 시간대입니다. 낮 시간대에 종편들에 대한 보도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굳이 낮 시간대라고 하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시청시간대를 하면서 전체 방송시간

의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시간은 어떤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종편이 낮 시간대에 굉장히 보도 쪽을 많이 편성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청을 할 때 TV 기능 중에 편안하게 TV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양을 쌓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또 보도가 과잉되다 보면 온 국민이 편안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평가기준을 마련한 만큼 엄격하게 분류를 지키고 또 보도편성 비율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 너무나 보도 과잉이 되지 않도록 종편이면 종합편성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방송평가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나온 것처럼 비율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율만큼이나 과연 보도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사업자가 분류를 해서 오면 특별한 검증 없이 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 새로운 방송평가규칙, 또 세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연 보도프로그램인지, 교양프로그램인지를 분명히 검증하는 기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시행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심의한 방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고삼석·김석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여기에서 새로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평가위원장으로서 사회자의 위치를 지켰고, 아까 국장께서 다수 의견에 쫓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방송평가위원 중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분은 두세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론 분야 세 분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은 “자신은 사무처가 사전에 마련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자기 개인은 33%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자문회의에서 다수 의견이 45%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지했고, 다른 언론 분야 두 분 다 교수이신데 한 분은 “자신은 45%에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견을 냈고 반대라는 것을 속기록에라도 분명히 남겨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강력히 반대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상한선이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른 평가위원님들은 언론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보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과 유보적인 의견들이 제시됐고, 그래서 고육책처럼 '그러면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그 제출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온 것은 곤란하겠다. 실사·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뉴스만을 보도로 점점 인정해 가는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뉴스해설, 뉴스분석, 뉴스의 뒷이야기는 다 보도 분야이다, 물론 뉴스의 뒷이야기를 가지고 따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면 그것은 교양이나 오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트레이트뉴스와 관련된 해설분석, 뒷이야기, 심층 평가는 보도 분야인데 이것을 점차 보도 편성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교양 분야로 돌리거나 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실사·검증해서 재분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보도편성비율 45%는 너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으로서 그 평가위원회의 분위기는 다른 분들이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사무처가 또 자문위원회도 개최해서 마련한 이 안을 그대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 위원이나 김석진 위원과 함께 45%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보도편성비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논란인데 이게 조금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 개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교통정리를 보도 분야에서 교양 분야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사도 많이 해야겠지만 우선 편성비율의 규제 상한선 45%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저도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방송평가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심의했지만 여기에서 다시 재론해서 하향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콘텐츠 제작비 평가에서 제작비 항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사·검증하지 않고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데도 인정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어떤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실질적인 인력이라면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기획, 아이디어, 또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국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국장, 본부장의 인건비까지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인건비 인력을 어디까지 선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금까지의 관행은 안 되겠다, 실사·검증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정확한 정밀한 방송평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도편성비율 45%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장님, 당시의 방송평가위원회에 참석했던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참석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평가위원 전부가 일곱 분이신데 한 분께서 불참하시고 여섯 분이 참석하셨습니

다. 그중에서 주시청시간대 평가와 관련해서 명백한 반대의견을 하셨던 분은 한 분 있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분 모두 말씀하셔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5%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으셔서 당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위원장께서 '부위원장 개인으로는 다소 높다고 하셨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하시니 그러면 45%로 결정을 하되 그 조건으로 실제 방송평가할 때 프로그램 분류에 다르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평가지원단에서 실사하도록 합시다'라고 당시 위원장으로 주재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조건을 다셔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예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가지고 부위원장님과 방송기반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론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방송평가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결론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과는 또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은 이 논의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 항목에서의 평가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참고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락 분야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락 분야는 유일하게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체적인 편성비율을 결정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오락의 경우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를 그것보다는 10% 정도를 올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 분야에 관해서는 45%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문단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문단에서는 아주 낮은 퍼센트부터 45% 보다도 훨씬 더 초

과하는 퍼센트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방송법 제69조제3항에 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법에서 말하는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편중이 되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앞부분에는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 주시청시간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시기에 비율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는 것과 편중되는 것과는 또 약간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문단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 결국에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법 조항과 오락 분야를 60%로 한 것 등등을 다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평가위원회는 심의하는 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 회의에서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의결하고 방망이 쳤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명의 평가위원 중에 시민단체 한 분이 안 오셨고 시민단체 한 분은 물론 여기에 반대입니다. 너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6명의 위원 중에 언론학자 3명, 자문회의에서 언론학자 한 분은 자기는 개인적으로 33%라고 했지만, 자문단 회의에 참여한 분들의 다수 의견이 이런저런 이유로 45%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갔고 그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학자 다른 한 분은 "자신은 이것 강력히 반대이다. 이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속기록에라도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학자 다른 한 분은, 이분은 지지했습니까? 지지의사,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갔고, 여기에 찬반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 법률가 한 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니까 처음부터 너무 강경하게 하지 말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고, 다른 한 분 회계사, 이 분 여기에 지지했습니까? 언론학자 한 분과 회계사 한 분은 찬반 의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의 평가위원 중에 강력한 지지는 한 분이었고 거기에 '최초 도입 제도니까 그냥 그대로 갑시다' 하고 그냥 묵인해 준 법률가가 계셨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제가 거짓말, 다른 소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것은 왜곡이지요. 같이 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평가위원회에 간사 과장 한 분만 들어오십시오. 국장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발언권을 가지고 계속 발언하고, 다른 평가위원들 말을 막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제지하지 못한 것은 평가과장이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돼서 미안하지만 실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그냥 발언기회를 주면서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 중에 간사 역할을 하는 과장이 있는데 왜 국장이 들어와서 사무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문단을 거친 의견이라고 하면서 계속 평가위원들의 말을 막고 그렇게 발언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말을 막고 발언한 것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이요.

○ **김재홍 부위원장**
- 발언이 너무 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4명이 여기에 다 지지했다고요? 제가 사람을 대지 않습니까? 회계사, 언론학자 한 분은 여기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위원장 한 사람이 가서 사회를 보니까, ……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위원회에서의 논의내용은 저희가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여기 상임위원 세 사람이 45%에 반대입니다. 조정합시다. 분명히 아까 고삼석 위원과 김석진 위원과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수결은 아니지만….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들의 의견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각자 제가 알기로 아까 고 위원도 명확하게 의견표명을 아직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위원회 이야기는 그만 여기에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자꾸 왜곡해서 이야기하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는데 전체 내용을 속기록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회의록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찬반이 분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아마 그런 논의 과정보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중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의견이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최대한 사무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을 빼고 5명의 위원들 중에서는 그냥 묵인 내지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한 것인데 와서 보니까 이 안건을 심의하고 제출한 책임자로서 정말 무지하게 미안하고 여러 가지 송구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국장이 또 계속 저와 다른 소리를 하고, 현장 분위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세 사람은 보도비율 45%에 반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세 사람 반대라는 것은 부위원장님의 의견이고, 다른 분들….

○ **김재홍 부위원장**

- 고 위원, 아까 반대 안 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차츰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아직….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방송평가위원회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국장님, 더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이니까 자꾸 그것 가지고 다투게 되면, 진짜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세 분이 반대했다면 세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45%로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처음으로 종편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평가대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도하게 내지는 과소하게 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종편인 경우에 보도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대다수가 느끼는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제도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프로그램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느슨하게 보거나 엄격하게 보거나 거기에 따라서 45%라는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점수입니다. 제가 <붙임 2>를 보니까 지상파인 경우에 보도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배점을 30점으로 하고 종편인 경우에 거기에서 3/4를 곱한다고 하니까 맥시엄 22.5가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22.5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2.5냐, 예를 들면 45점이냐, 10점이냐, 배점에 따라서 또 이런 평가를 하는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45%, 그리고 보도프로그램의 해당 여부에 대한 아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증을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는 그 부분, 그리고 평가 배점 이런 것들 서너 가지 요인이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45%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보도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또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야 할지,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하고, 최대 평가점수를 지상파 30점, 그리고 종편은 3/4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서 평가해 보고, 또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이 변수들을 조정해 나가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는 사실확인한 것이고, 내부 논의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5%라는 보도편성비율이 높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정책을 판단할 때는 다른 것도 감안합니다만 2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급격하게 사업자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사업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지향성 내지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종편의 보도편성비율을 현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높도록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더 감소시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45%라는 기준은 현실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도편성비율이 높다고 했던 특정 2개 종편 같은 경우 금년 1/4분기를 보면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조선 6% 정도 감소가 됐고, 채널A도 7%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추세입니다. 나머지 1개 종편만 약간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전년 대비 금년 1/4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종편들이 우리의 권고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들의 의견, 즉 보도프로그램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45%로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종편들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시그널(Signal)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5%를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방송평가할 때 45% 기준으로 볼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재승인할 때 어떻게 봅니까? 45%를 기준으로 볼 것입니다. 45% 넘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히 종편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프라임타임 때 45%입니다. 이것은 보도 장르로 명확히 분류가 되는 프로그램이 45%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적하기를 교양의 포맷은

띠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시사 내용을 다루는 보도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라임타임 때 45%지만, 교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시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50%를 넘습니다. 이것은 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 검토에서도 제 의견을 냈듯이 저는 보도 분야 편성비율은 40%를 상한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그게 또 우리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다는 입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제가 아까 조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렸는데 사실은 자문단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면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오락과 보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락과 보도는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조문,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개념은 보도의 경우에는 또는 오락의 경우에는 다르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오락이나 보도나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도가 몇 퍼센트면 오락도 그것에 맞춰서 최소한 상당 부분을 낮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행 방송법 하에서 이 방송법을 토대로 해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과 종편의 보도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율을 어떻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또 별개의 수단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방송평가규칙 또 세부규칙은 결국에는 법에 근거를 해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치가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추는 것, 아무런 방송사한테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다른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왜 오락은 60%로 하고 보도는 낮은 비율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60과 45가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율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기준을 통해서 방송의 전체적인 경향을 어느 쪽으로 유도하자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 논리로 보면 위원장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종편을 허가할 때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최소한 종편이라고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 맥락도 있습니다만 각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인데 그것의 모델은 뭐냐 하면 지상파들입니다. 지상파들이 현재 종편들이 하듯이 그렇게 보도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안착하는 동안 물론 특정 시기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종편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당장 그게 안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법의 취지로만 본다면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오락에 준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러나 저희가 최초로 종편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수립했던 종편 승인 정책방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종편들이 냈던 첫 번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5개년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달성하겠다, 이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승인 했던 것이 몇 년도지요?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4년도에 아마 내줬을 것인데 그때도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법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반드시 꼭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도 종편PP 정책, 사업자들이 낸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한다면 우리가 꼭 45% 이하로 보도편성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법에 ‘편중되지 않게’라는 법문을 두고 이 ‘편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장르가 2개로 방송법상 분류가 되어 있다면 편중 50% 넘지 않으면 편중이 아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방송법상 여러 관련 규정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는 3대 장르입니다. 보도, 교양, 오락입니다. 요새 새로이 현실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는 그냥 오락에 넣더라고요. 그러면 3대 장르의 균형성, 편중되지 않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언론학자들 상당수가 33%, 1/3 선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보도·교양·오락도 객관적으로 널리 합의된 것이라기보다는 법문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딱 갈라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하지는 않고 있지요. 1/3 선인 33%에 비교해 봤을 때 45%는 현재 학계, 전문가단체, 국민여론상 보도가 너무 많다, 보도편성비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그것을 낮추라는 권고가 재승인 신청 때마다 붙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정책의지로 봤을 때에 이것은 너무 높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는 33%는 아니더라도 33%와 45%의 중간선쯤 절충하는 선인 40%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편성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파들은 다 KBS 32%, 2015년도와 2016년도 전반기 MBC 22%, SBS 20.11%, 그런데 종편 도입할 때 정책상 또 법문상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종편들만 46%, 40%, 42%, 3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방송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보도전문채널을 따로 우리가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은 정말 조화롭고 균형 있는 종합편성채널답게 운영하도록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정책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45% 상한선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40% 정도로 낮춰서 계속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2015년도의 보도편성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또 이행촉구가 있어서 그런지 2016년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낮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MBN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 상반기에 42.6%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야말로 총선이 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뉴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시청시간대 MBN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45%라는 기준선을 제시할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올 상반기 총선 보도 때보다 더 많은 뉴스를, 그러니까 보도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40%가 적정한지는 더 토론을 해서, 어쨌든 45%보다는 낮아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해서 40%와 45% 사이에 어떤 선이 더 적정한지를 조금 더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분야인데 오락은 60%를 넘어야만 편중됐다고 보고, 보도는 사실은 45%를 넘었다고 했을 때 편중된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는다면 사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보도·교양·오락 이 세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락이 차지하는 비중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라는 것은 방송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내놓은 분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검증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로서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락과 보도를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최소화하고, 다만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방송사가 제출하는 것에 대해 보도냐, 교양이냐를 더 엄밀하게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보도가 감소되었으면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이 세부기준에 대해서 한 주일 후 정도 의견을 다시 모아서 결정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 보고 그 비율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오락은 60%

까지 허용하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법상 프로그램 3대 장르 중에 유일하게 50%로 제한선을 둔 것이 오락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송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성격이 강한 것이지요. 그냥 놓아두면 오락 기능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실정법에 둔 것입니다. 주시청시간대 60%,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의 특성,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허용해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실정법상 50% 제한선을 넘어서서 주시청시간대라고 해 주어야 하느냐? 이것도 다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보도, 이것은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도가 너무 많다, 정치 평론이 난무하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막말과 편파방송이 비롯된다, 사실 제일 많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보도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락 50%, 60%와 보도 분야는 방송의 특성상 조금 잣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를 다시 한 번 쭉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 방송 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행 실정법령 제69조와 제50조에서 정한 제도와 상충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5%로 평가기준을 설정,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45%까지 편성하면 점수를 배점하는 데 만점을 받게 되고, 그 이상 편성이 되면 감점되어 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그게 평가기준을 설정한다는 말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임 2> 28페이지에 보니까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5% 미만인 경우에는 30점, 55% 이상인 경우에는 0점 그리고 45%와 55% 그 사이인 경우에는 그 스케일대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자꾸 45%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45%냐, 그 아래냐, 위냐, 그것이 1차적인 지금 우리의 논점이긴 하지만 아까 보도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 그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때 사무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28페이지에 맨 밑 줄 두 줄, 인센티브, 이 전체 평가제도가 배점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45%를 기준으로 해서 만점을 준다고 해 놓고, 만약에 45% 밑으로 편성 운영을 할 경우에 소위 말하는 가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저희가 너무 45%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방송법 제69조와 시행령 제50조에 저촉이 안 되면서 지금 종편인 경우에 보도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지나치게 편성되는 것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송평가제도의 운영,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더 다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사무국에서도 한 번 더 논의할 시간은 있다고 하니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또 의견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평가 세부기준은 상정된 상태로 보류해 놓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6-42-14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붙임 1>과 같이 산정한 결과, 시청점유율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및 고시에 따라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고 시청점유율 제한규정에의 해당 여부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하여 <가> 산정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2015년도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방송을 1로 볼 때 두 번째입니다.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0.39%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다>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결과, 맨 마지막입니다. 조선일보 계열 6.623%, 중앙일보 계열 3.661% 등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입니다. 209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1년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산정결과는 주요 지상파의 경우 KBS 27.7%, 문화방송 16.5%, SBS 9.0%, EBS 2.0% 등으로 나타났으며, 타 방송사업자는 아래의 <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송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시청점유율 조사는 법상 어느 미디어그룹이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법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해 봤더니 아무 미디어그룹도 시청점유율 30% 넘는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주문이 그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나 어떻게 해서 없는지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것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주객이 전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론층이나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시청점유율 조사내용입니다. 어떤 미디어가 어느 정도의 시청점유율,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변화 추이를 보는데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왜 일반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작년에도 국회에서 나왔고 금년 결산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구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이것은 매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반공개….

○ **최성준 위원장**
- 일반공개 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일반공개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최성준 위원장**
- 다 공개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로우 머트리얼(Raw material)처럼 그냥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느냐? 요청을 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국회에서 왜 그것을 따지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근거 없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질문하는 대상은 N스크린이나 VOD와 같이 아직 시범조사에 들어가 있는 시청점유율 조사와 관련된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적받은 것은 아직 신뢰도나 조사 기술상 타당성을 인정받지 않은 N스크린, 그것은 아직 일반공개 하지 않고….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아직 시범조사 중이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이 안건은 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새로운 N스크린 조사방법, 기법을 동원한 것은 언제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여서 일반공개가 가능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것은 아직 시범조사이고, 그래서 오늘 안건에는 N스크린 측정조사에 대한 지침을 사실 이번에 제정해서 공포하게 됩니다. 아직 시범조사이고 그 조사의 지침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N스크린 조사를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작년에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에 할 것이고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몇 년 뒤에 계획을 세워서 신뢰도를 높이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일반공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사 기술상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일반인들은 순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거기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경마식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래서 <붙임 2>에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 3년치 추이를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3년치를 보면 나름대로 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시청점유율 30%에 규제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순위를 마치 경쟁하듯이 발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매체교환율에서 제가 작년에도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방송을 1로 치면 신문을 0.39로 환산하게 되어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0.39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제가 물어봤었고, 이게 타당한 것이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의 영향력에 0.39냐? 이것은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으로 그게 합의될 수 있는 선입니까? 환산비율은 학자들이 물론 만들어낸 수치겠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100% 합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방법으로는 방송과 일간신문의 광고매출, TV와 신문의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2가지를 분석해서 종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학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 수치를 정하는 과정에 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자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저도 방송도 많이 해 봤는데, 방송 대 신문을 1:0.39로 매체교환율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오늘로 세 번째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연구자들이나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은 미디어그룹의 시장점유율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우 중요한데 조금 더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들도 가능한 것인지를 연구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시청점유율을 산정하는 법적 근거가 방송법 제69조의2를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시청률로 환산을 하더라도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5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30/100이 넘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그다음에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온 조사결과로 보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상 범위가 여기에 시청점유율 조사에 포함시킨 대상 매체가 너무 많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종편PP를 승인하면서 미디어다양성의 위축이라든가 또 여론 다양성의 위축에 대해서 보완장치, 즉 미디어의 다양성이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점유율

조사결과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법이 도입된 취지, 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정부에서 출자한 KBS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 밑으로 떨어졌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문구독율을 시청률로 환산할지라도 종편 계열의 방송사들 시청점유율이 규제 선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물론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1:1로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신문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하는 관심을 갖고 검토하기보다도 제69조의2 전체가 과연 제도로써 의미가 있느냐, 법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일종의 말씀드리면 30%라고 하는 것이 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방송에서 그것을 넘는 것이 있어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래서 말씀하신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면 법을 제정한 목적, 정당성, 나름 존립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는 여러 지적대로 그것이 한 번도 위반하는 사업자들이 없다고 해서 그 존립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정책연구 과제라든가 또는 전문가 의견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이 제도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거나 조사결과가 무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했던 209개 방송사업자, 이 중에 10% 넘는 사업자가 몇 개입니까? 전부 해 봐야 3개입니다. KBS, 그다음에 MBC 그리고 CJ E&M 계열 이 3개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상한선을 대폭 낮추어야지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차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 지금 워낙 미디어 매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몇 안 되는 미디어 매체니까, 30%가 의미가 있는 수치였겠지만 지금

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 시청점유율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상황이니까 바로 지금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 더 의미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의견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체교환율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매체교환율의 적정성 문제일 수도 있고, 일간신문인 경우에 구독률을 기본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간신문 기사 내용을 종이신문을 집에서, 사무실에서 구독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광의의 열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방송인 경우에도 아까 N스크린 이야기도 하셨지만 TV가 아닌 PC나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매체 이용환경을 고려한 시청점유율 환산 내지 산정하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 노력을 해야지 시청점유율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종편 출범할 때 앞서서 안전장치로 30%를 법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려면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붙임 2>의 매체별 트렌드를 보면 연도별로 어떤 매체할 것 없이 물론 시청점유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분산되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법의 제목은 시청점유율 제한이지만 이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시청점유율이 30%가 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전장치로 두고, 그렇지만 방통위도, 정부도, 일반 국민도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청점유율이 매체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주는 시그널(Signal),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체별로 시청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매체교환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성을 줄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사해서 알리는 그 자체가 제도화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특정 매체가 시청점유율이 30%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때 매체

교환율을 얼마 적용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전반적인 연도별·매체별 시청점유율 변화 추이 그것 자체를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안건을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셨고 전체적인 취지는 지금 방송법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규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모바일기기 · PC 시청기록 조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모바일기기 · PC 시청기록 조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스마트폰·PC를 이용한 방송콘텐츠 이용기록 조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패널 구축, 검증 등 조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사원칙으로 먼저 모집단의 포함 범위를 극대화하며, 두 번째 확률표집 추출을 의무화하고, 세 번째 측정도구 등 조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 확보 노력을 부과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시청기록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가중값의 타당한 적용방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청기록 시에는 조사패널은 만13세 이상의 개인으로 하며, 모바일기기 및 PC를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방송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여 패널수는 최소한 5,000명 이상으로 하였으며, 지역, 성, 연령 등의 기준으로 대표성을 평가하고, 시청기록 측정 도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기록 산정 및 검증 시에는 시청기록 정보는 시청기록 산출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의 삭제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30초 단위 편집규칙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가중값은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주요 기준을 이용하여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기록 검증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검증은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였으며, 상시검증연구반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청기록 조사 사업 및 검증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민관협의회를 맡고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경과를 보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6월에 민관협의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개최했지요?

○ 김성규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 김성규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민관협의회 때 이 내용을 설명하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 지침 자체가 방송사업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조사회사에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성규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올해는 7억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모집단을 5,000명 이상으로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샘플링 자체를 크게 가져야 하고, 또 퀄리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모집단의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1:1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층면접도 해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참 어렵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도 충분히 있어야 하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아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베이 같은 것을 하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서 저는 질적인 측면, 질적 고도화 결국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조사의 신뢰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질적인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통합연구반을 1년 내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또 100%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지만 거의 매달 회의를 하면서 중요 부문을 짚고 논의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통합연구반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참석시켜서 논의하고 기술적인 측면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작년에 시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 두 군데밖에 사실상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의 기술적인 능력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단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사를 하면서 수시로 중간중간에 조사결과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1년 내 상시 운영하기로 한 전문가 연구반에서 그 문제점을 바로바로 지적해서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월 의결되어 공포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내용 중 규칙 적용일 관련하여 신설된 부칙안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개정 이유는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오늘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어차피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평가 세부기준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것과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안건을 설명하시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새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평가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재 부칙 제41호의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도 2월 1일 방송실적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부기준을 하게 되면 평가대상 사업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세부기준이 의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7월을 기준으로 평가규칙을 새롭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행정예고안에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앞으로 개정될 세부기준입니다. 그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 7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8월 중에는 위원회 의결과 관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평가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에 관한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평가규칙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각 방송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또 7월 1일 그러면 평가를 할 때도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상반기는 종전 방송평가규칙, 그다음에 하반기는 개정된 방송평가규칙 이렇게 평가를 하면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향후 일정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시 특별한 이견 없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가 되어서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의결도 제가 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든 앞에 논의된 그것과 이것의 시행일 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일정은 최대한 단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미 7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22일 날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빨리 마련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준에 따른 그런 방송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8월까지 간다면 가뜩이나 늦어졌는데 소급 적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오늘 이게 통과가 되니까 설명을 해서 '이번 달부터 적용이다' 그래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사무처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05분 】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11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